제2946호 2022. 8.19.

발행인: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김 길 성 편집인: 홍 보 전 산 과 장도 순 심

전화: 3396-4951

(http://www.junggu.seoul.kr)

}-



● 자치법규

[규 칙]

제756호 : 서울특별시 중구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일부개정규칙	2
제757호 : 서울특별시 중구 해정기구 설치 조례 시해규칙 일부개정규칙	9

※ 구보게재를 의뢰한 각 부서에 알려드립니다. 구보의 게재내용은 중구청 홈페이지<http://www.junggu.seoul.kr(행정정보→구보/입법예고) 클릭>에 게재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● 구보게재의뢰 TEL.(02)3396-4951 / FAX.(02)3396-9022/3 ● 구보는 매주 수요일 발행이며, 발행일 3일 전까지 접수되어야 합니다. ※ 구보 게재일자가 문서 시행일이니,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※ 구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가지며, 구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합니다.

공람						
0 11						



제2946호 9-2 2022. 8. 19.

자 치 법 규

[규 칙]

서울특별시 중구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.

2022년 8월 19일

서울특별시 중구청장 김 길 성 (인)

◉ 서울특별시 중구 규칙 제756호

서울특별시 중구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일부개정규칙

서울특별시 중구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부터 제12조까지 및 제21조를 각각 삭제한다.

제24조제2항 본문 중 "서면"을 "서면(전자문서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.)"으로 한다. 제25조를 삭제한다.

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별지 제3호서식부터 별지 제9호서식까지 및 제15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946호 9-3 2022. 8. 19.

[별표 1]

음식물·경조사비·선물 등의 가액 범위(제23조제2항제2호 관련)

- 1. 음식물(제공자와 공직자등이 함께 하는 식사, 다과, 주류, 음료,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한다) : 3만원
- 2. 경조사비 : 축의금·조의금은 5만원. 다만, 축의금·조의금을 대신하는 화환·조화는 10만원으로 한다.
- 3. 선물 : 금전, 유가증권, 제1호의 음식물 및 제2호의 경조사비를 제외한 일체의 물품,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은 5만원. 다만, 「농수산물 품질관리법」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(이하 "농수산물"이라 한다)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가공품(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만 해당하며, 이하 "농수산가공품"이라 한다)은 10만원(「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7조제2항에 따른 기간 중에는 20만원)으로 한다.

비고

- 가. 제1호, 제2호 본문·단서 및 제3호 본문·단서의 각각의 가액 범위는 각각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합산 한 금액으로 한다.
- 나. 제2호 본문의 축의금·조의금과 같은 호 단서의 화환·조화를 함께 받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한다. 이경우 가액 범위는 10만원으로 하되, 제2호 본문 또는 단서의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 된다.
- 다. 제3호 본문의 선물과 같은 호 단서의 농수산물·농수산가공품을 함께 받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한다. 이 경우 가액 범위는 10만원(『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』 제17조제2항에 따른 기간 중에는 20만원)으로 하되, 제3호 본문 또는 단서의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 된다.
- 라. 제1호의 음식물, 제2호의 경조사비 및 제3호의 선물 중 2가지 이상을 함께 받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한다. 이 경우 가액 범위는 함께 받은 음식물, 경조사비 및 선물의 가액 범위 중 가장 높은 금액으로 하되,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 된다.

제2946호 9-4 2022. 8. 19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7조 (사적 이해관계의 신고)	<u><</u> 삭 제>
① ~ ⑥ (생 략)	
제8조 (고위공직자의 민간 분야 업무활	<u><삭 제></u>
동 내역 제출)	
① ~ ③ (생 략)	
제9조 (직무 관련 영리 행위등 금지)	<u><삭 제></u>
① ~ ② (생 략)	
제10조(가족 채용 제한)	<삭 제>
① ~ ③ (생 략)	
제11조(수의계약 체결 제한)	<u><</u> 삭 제>
① ~ ③ (생 략)	
제12조(퇴직자 사적 접촉의 신고)	<u><삭 제></u>
① ~ ② (생 략)	
제21조(공용물의 사적 사용·수익의 금	<u><삭 제></u>
지) 공무원은 청사·관용 차량 등 공	
용물과 예산의 사용으로 제공되는 항	
공마일리지, 적립포인트 등 부가서비	
스를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	
로 사용·수익해서는 아니 된다.	
제24조(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	제24조(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

제2946호 9-5 2022. 8. 19.

및 신고) ② 공무원은 외부강의등을	및 신고) ②
할 때에는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	
의 요청 명세 등을 구청장에게 그 외	
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	
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<u>서면</u> 으로 신	서면
고하여야 한다. 다만, 외부강의등을	(전자문서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-
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	
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	
	·
제25조(직무관련자 거래 신고)	<삭 제>
① ~ ⑥ (생 략)	
[별표 1] 음식물, 경조사, 선물 등의 가액범	[별표 1] 음식물, 경조사, 선물 등의 가액범
위(제23조제2항제2호 관련)	위(제23조제2항제2호 관련)
3. 선물: 금전, 유가증권, 제1호의 음식물	3
및 제2호의 경조사비를 제외한 일체	
의 물품,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은 5	
만원. 다만, 「농수산물 품질관리법」	
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(이	
하 "농수산물"이라 한다) 및 같은 항	
제13호에 따른 농수산가공품(농수산물	
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	
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만 해당하며,	
이하 "농수산가공품"이라 한다)은 <u>10</u>	
<u>만원</u> 으로 한다.	10만원(「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
	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7
	조제2항에 따른 기간 중에는 20만
	<u>원)</u>

제2946호 9-6 2022. 8. 19.

나. 제2호 본문의 축의금・조의금과 나. 제2호 본문의 축의금・조의금과 같은 호 단서의 화환·조화를 함 께 받은 경우 또는 제3호 본문의 선물과 같은 호 단서의 농수산 물 · 농수산가공품을 함께 받은 경우에는 각각 그 가액을 합산 한다. 이 경우 가액 범위는 10만 원으로 하되, 제2호 본문 또는 단 서나 제3호 본문 또는 단서의 가 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 된다.

같은 호 단서의 화환·조화를 함 께 받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 산한다. 이 경우 가액 범위는 1 0만원으로 하되. 제2호 본문 또 는 단서의 가액 범위를 각각 초 과해서는 안 된다.

다. 제1호의 음식물, 제2호의 경조사 다. 제3호 본문의 선물과 같은 호 비 및 제3호의 선물 중 2가지 이 상을 함께 받은 경우에는 그 가 액을 합산한다. 이 경우 가액 범 위는 함께 받은 음식물, 경조사 비 및 선물의 가액 범위 중 가장 높은 금액으로 하되,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 된다.

단서의 농수산물・농수산가공품 을 함께 받은 경우에는 그 가액 을 합산한다. 이 경우 가액 범위 는 10만워(「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 행령 시 제17조제2항에 따른 기 간 중에는 20만원)으로 하되. 제 3호 본문 또는 단서의 가액 범 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 된다.

<신 설>

라. (현행 다목과 같음)

제2946호 9-7 2022. 8. 19.

[별지 제3호 서식] 사적 이해관계 신고 서	<삭 제>
[별지 제4호 서식] 이해관계자의 직무 재배정 등 조치 신청서	<u><삭 제></u>
[별지 제5호 서식] 의견서	<u><</u> 삭 제>
[별지 제6호 서식] 업무 담당 공무원 의 직무 재배정 등 조치 신청서	<u><삭 제></u>
[별지 제7호 서식] 사적 이해관계 신고 등 확인·조치 내역서	<u><</u> 삭 제>
[별지 제8호 서식] 고위공직자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서	<u><삭 제></u>
[별지 제9호 서식] 퇴직자와의 사적 접 촉 신고서	<u><</u> 삭 제>
[별지 제15호 서식] 직무관련자 등과의	<u><</u> 삭 제>
거래 신고서	

제2946호 9-8 2022. 8. 19.

서울특별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.

2022년 8월 19일

서울특별시 중구청장 김 길 성 (인)

● 서울특별시 중구 규칙 제757호

서울특별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

서울특별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17호 및 제1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6조(동정부과) 동정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

- 17. 평생학습체제 구축 및 학습모임 지원에 관한 사항
- 18. 시민친화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12조제14호부터 제17호까지를 삭제한다.

제32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32조(행정지원과) 행정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

5. 평정(경력·근무성적) 및 서열명부 작성 관리에 관한 사항 제33조제15호를 삭제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946호 9-9 2022. 8. 19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6조(동정부과) 동정부과장은 다음 사	제6조(동정부과) 동정부과장은 다음 사
항을 분장한다.	항을 분장한다.
17. 시민친화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	17. 평생학습체제 구축 및 학습모임
속하지 아니하는 사항	지원에 관한 사항
18. <u><신 설></u>	18. <u>(현행 제17호와 같음)</u>
제12조(교육아동청소년과) 교육아동청	제12조(교육아동청소년과) 교육아동청
소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	소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
14. 평생교육사업 시행에 관한 사항	14. <u><삭 제></u>
15. 평생학습 프로그램 지원 및 운영	15. <u><삭 제></u>
에 관한 사항	
16. 평생교육기관단체 간 네트워킹	16. <u><삭 제></u>
구축사업에 관한 사항	
17. 사이버평생학습센터 구축 및 운	17. <u><삭 제></u>
영에 관한 사항	
제32조(행정지원과) 행정지원과장은 다	제32조(행정지원과) 행정지원과장은
음 사항을 분장한다.	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
5. <신 설>	5. 평정(경력 근무성적) 및 서열명
	부 작성 관리에 관한 사항
제33조(기획조정과) 기획조정과장은 다	제33조(기획조정과) 기획조정과장은
음 사항을 분장한다.	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
15. 평정(경력·근무성적) 및 서열명	15. <u><삭 제></u>
부 작성 관리에 관한 사항	